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08.10

제1판: 2009년 6월 10일

개정4: 2019년 2월

비기술조사

Non-technical survey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메디슨 애비뉴 380, M11023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0691

팩스: +1 (212) 963 2498

웹사이트: www.mineactionstandards.org

번역: (사)평화나눔회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may).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380 Madison Avenue, M11023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212) 963 0691

FAX: +(1212) 963 2498

목 차

머리말	4
해설	5
비기술조사	7
1. 적용범위	7
2. 인용표준	7
3. 용어, 정의 및 약어	7
4. 비기술조사의 목적	9
5. 비기술조사의 산출물	10
6.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기록요구사항	10
6.1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기준	10
6.2 취소	12
6.3 모든 합리적인 노력	12
6.4 증거기반 의사결정과정	13
7. 비기술조사 방법	13
8. 정보원	15
8.1 일반사항	15
8.2 정보원의 사정(査定)과 분류	16
8.3 토지 및 도로 이용	17
8.4 위험지역의 세분화	17
9. 조사팀 요구사항	18
10. 문서	18
11. 지역사회 참여	19
12. 책임 사안	20
13. 책임과 의무	20
13.1 국가지리행동기구	20
13.2 조사단체	21
부속서 A 인용(표준)	22
개정 기록	23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해 설

본 표준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 토지해제 및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 기술조사와 함께 읽는 것이 좋다(shall).

비기술조사는 통상 토지의 사정(査定), 위험의심지역(SHA, Suspected Hazardous Area) 또는 위험확인지역(CHA, Confirmed Hazardous Area)으로서 범주화 및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토지를 취소, 축소 또는 제거하는 관련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다. 비기술조사는 일반적으로 폭발물위험 지역 안에서 지뢰행동 장비자산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폭발물오염 의심지역 또는 이미 기록이 있는 위험지역에 대해 수행하는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다.

비기술조사는 보통 기술조사나 제거작업 보다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넓이로 따져 보면 오염지역의 확인과 관리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비기술조사라는 용어는 데스크 조사, 역사적 기록에 대한 분석, 광범위한 기타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뿐 아니라 물리적 현장방문을 비롯한 모든 비기술적 방법을 포함한다. 비기술적 프로세스의 모든 요소들은 폭발물이 발견되는 곳과 발견되지 않는 곳을 규정하고 토지 취소, 축소 및 제거라는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확인, 사정, 수집, 보고 및 사용하는 일을 중심으로 다룬다.

폭발물 오염문제에 대응하는 자원은 비싸고, 적고, 귀하다. 자원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에 서술된 단계별 대응절차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값비싼 기술자산은 그 사용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작업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는 그런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술자산의 배치에 관한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증거제공의 주요수단이다.

동시에 비기술조사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기술조사만으로 토지해제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기준은 비기술조사에 있어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가장 높은 표준들을 적용하여 비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후에 이루어질 토지해제 프로세스에 적용될 효과성과 효율성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비효율적 비기술조사는 과도한 위험의심 지역을 남기게 되어 활발한 토지사용을 어렵게 하거나 불필요한 기술적 작업의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효과적인 비기술조사는 위험지역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당장의 의문사항들을 해

결해줄 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토지해제 과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하고, 수집하고, 분석해 온 과정을 보여주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개념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토지해제 프로세스의 근본 목적을 강화하여 토지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게 하는 일이다.

비기술조사는 토지해제 프로세스 내의 후속 활동들로부터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should). 비기술조사 프로세스 및 절차의 지속적 개선은 기술조사 중에 어떤 위험물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지역 안에서 추후에 발견된 것과 토지해제 이후의 지역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의 결과를 고려하는 성과 검토에 달려 있다.

비기술조사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비기술조사의 수행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책임과 의무를 자세히 설명한다.

2. 인용표준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시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 1) ‘해야 한다(shall)’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2)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3) ‘할 수 있다(may)’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토지해제(Land Release)’라는 용어는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및 제거를 통하여 모든 폭발물의 존재 및 의심을 식별하고,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은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shall).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er) 및 국가지리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위험의심지역(Suspected Hazardous Area)**’이라는 용어는 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 증거를 기반으로 폭발물 오염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위험확인지역(Confirmed Hazardous Area)**’이라는 용어는 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기반으로 폭발물 오염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을 말한다.

‘**비기술조사(Non-technical Survey)**’라는 용어는 폭발물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쉽게 판별하고 제공된 근거를 기반으로 토지해제의 우선순위결정 및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폭발물 오염의 존재, 유형, 분포 및 주변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조사(Technical Survey)**’라는 용어는 폭발물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쉽게 판별하고 제공된 근거를 기반으로 토지해제의 우선순위결정 및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기계를 사용하여 폭발물 오염의 존재, 유형, 분포 및 주변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폭발물(Explosive Ordnance)**’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탄약에 대한 지뢰행동의 대응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뢰
- 확산탄
- 불발탄
- 유기폭발물
- 부비트랩
- 기타 폭발물(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개정의정서 II에 의한 정의)
- 급조 폭발물*

참고: **급조폭발물(IEDs,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은 활발한 교전행위가 중단된 지역에서 인도적 지뢰 제거가 진행될 때, 지뢰, 부비트랩 또는 기타 폭발물의 정의에 부합하며, 지뢰행동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All Reasonable Effort)**’이라는 용어는 지뢰오염지역을 확정하고 기록하거나 또는 폭발물의 존재나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용할만한 가장 낮은 수준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용어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은 기대되는 결과에 비해서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될 때 적용되는 말이다.

‘취소지역(Cancelled land, m²)’이라는 용어는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에 대한 비기술 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폭발물 오염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정 지역을 말한다.

‘축소지역(Reduced land, m²)’이라는 용어는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기술조사 시행에 따라 폭발물 오염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정 지역을 말한다.

‘제거지역(Cleared land, m²)’이라는 용어는 정해진 깊이까지 모든 폭발물의 위험을 제거 또는 파괴하여 지뢰의 위험이 사라진 지역을 말한다.

4. 비기술조사의 목적

비기술조사의 전체목적은 현장조사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비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 및 증거를 확인, 수집, 분석,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규정에 관해 권고하는 일
- 지역의 취소(cancellation) 또는 후속적인 축소(reduce) 및 제거(clear)에 관해 권고하는 일
- 우선순위설정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일
- 차후 기술조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에 기여하는 일

비기술조사의 상세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지역의 폭발물오염 여부를 사정(査定)하는 일
- 2) 간접적 증거를 기반으로 폭발물 존재여부의 분석을 통한 위험의심지역을 규정하는 일
- 3) 직접적 증거를 기반으로 폭발물 존재여부의 분석을 통한 위험확인지역을 규정하는 일
- 4) 폭발물오염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일
- 5) 우선순위설정의 결정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may) 사회경제적 요소 및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일
- 6) 폭발물 존재여부의 직접적 증거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하는 일
- 7) 표적기술조사 및 제거와 같은 후속 기술개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도울 수 있는(may) 오염에 관한 특징과 분포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할만하게 수집하는 일
- 8) 사람, 동물에 대한 사고와 사건에 관한 이용 가능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
- 9) 오염된 이후에 홍수, 침식, 산사태로 인한 토양의 퇴적과 같은 현지 환경의 물리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 10) 접근경로, 식생, 토양, 지형, 기반시설, 농업, 현지 치안 및 기타 요소들을 비롯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련될 수 있는(may)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참고: 필요할 경우, 기획자와 조사자는 기술자산을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외부 현장에서 사용하여 지형, 토양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식생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차후 기술조사 중에 도입할 수 있는(may) 진행 경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해당 요소들의 영향을 조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should).

5. 비기술조사의 산출물

비기술조사 프로세스의 산출물은 작업반경 안에서의 오염의 종류, 성질 및 분포에 관한 여러 정보들 가운데 본 조사에서 발견한 내용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 1) 어떤 비기술조사가 어디에서 수행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차후 계획과정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폭발물의 존재 및 의심을 확인, 정의 및 제거하는 데 적용되었음을 자세히 알리는 보고
- 2)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현존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해제를 포함하여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정의에 대한 권고사항
- 3) 타당한 경우, 권장되는 장비자산 종류 및 방법론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추가적 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 작업에 관한 권고사항
- 4) 기타 당국, 에이전시 및 단체들의 분석을 돕기 위한 데이터 및 정보

조사 시점에서의 상황 및 이해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산출물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may). 비기술조사의 운영자들은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추가 요구사항들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들이 조사의 기획, 수행 및 문서기록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6.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기록요구사항

6.1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기준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을 생성, 분류(refining), 구별 및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취소하기 위한 기준은 명확하고 모든 관련자에 의해 동의 및 이해되며,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되고 합의되는 프로세스를 통하여 모범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다(should).

그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개발되는 것이 좋다(should).

- 1)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일관된 정의를 추진하는 일
- 2) 토지 취소, 축소 및 제거(cancel, reduce, clear) 프로세스의 균일한 적용을 촉진하는 일
- 3) 토지 취소, 축소 및 제거(cancel, reduce, clear)의 운영을 간소화하는 일

4) 국제협약의 준수를 문서화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조약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일

5) 폭발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일

위험의심지역은 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 증거의 분석을 기반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지역 환경과 조건을 반영하고 작업반경 안에 있는 오염특성의 분석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 간접적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사용되지 않는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토지
- 지역 주민, 과거 전투원 및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나온 진술서
- 신뢰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거나 신뢰성이 평가되지 않은 폭발물 관련 기록
- 여러 알려진 오염지역, 전술적 및 역사적 기록의 분석
- 과거 전투지대
- 오염의 존재에 관한 직접적 증거의 기반을 갖지 못한 이전 조사에서 나온 증거
- 사고발생 지역을 정확히 단정 지을 수 없는 폭발물 사고 및 사건
- 확실한 잠재적 급조폭발물의 부품- 급조폭발물의 현지 조립 및 그것들의 배치 방법에 따른 상황적 특성

위험확인지역은 폭발물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 증거의 분석을 기반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지역 환경과 조건을 반영하고 작업반경 안에 있는 오염특성의 분석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 직접적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기록의 신빙성이 이전 작업 중에 확인된 폭발물 관련 기록
- 폭발물, 폭발물 부품, 파편 또는 탄공의 확실한 관찰
- 화재 중의 폭발 또는 동물로 인한 폭발
- 오염에 부합되는 지뢰 표지판, 울타리, 보조장비(상자, 깡통) 등
- 사고발생 지역을 정확히 단정할 수 있는 폭발물 사고 및 사건
- 예를 들면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 상황에 맞는 급조폭발물의 가시적 증거:
즉 부분적으로 드러난 전선, 압력판, 현지에서 제조한 주장약 등.

위험확인지역은 폭발물 오염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지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은 위험종류의 가능한 변화, 다른 증거와 관련된 확신 및 차후의 기획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련될 수 있는(may) 기타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되거나 내부구역으로 분할될 수 있다.

경계선은 이용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최대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정(査定)되는 것이 좋다(should).

6.2 취소

비기술조사에 따라 오염지역의 취소(cancellation)가 가능한 조건은 비기술조사를 포함하여 그 이전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적용되어 폭발물 오염의 증거가 없다고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취소를 위한 정당성으로서 증거 부재의 경우, 만약 실제로 오염이 존재하였다면, 적용된 노력의 총체는 지역과 관련된 증거를 식별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6.3 모든 합리적인 노력

모든 합리적인 노력(all reasonable effort)이라는 용어는 많은 산업시스템 및 법률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 용어는 하나의 시스템의 산출물에 있어서 신뢰의 단계를 바라는 레벨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노력의 수준을 말한다.

비기술조사는 한 지역에 적용된 유일한 활동일 수도 있고(may), 보다 넓은 토지해제 프로세스의 많은 활동 중의 하나일 수 있다(may). 모든 폭발물의 존재 및 의심을 확인하고 규정하며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기술조사는 그 자체의 권리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should), 토지해제에 부합하는 모든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와 관련하여 합당하고 기대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1) 작업지역 안에서의 오염의 성질 및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 2) 이용 가능한 역사자료, 과거 전투원, 피해 주민, 기타 관련 활동가 및 현장 위치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의 원천에로의 접근을 확실히 하고 권한을 획득하는 일
- 3) 현장의 정보수집이 여성, 어린이, 남성을 포함한 모든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조사팀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사실을 알리는 일
- 4) 모든 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일
- 5)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분석 및 검토를 기반으로 유능하고 권한을 가진 인력들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일
- 6) 비기술조사에 합당한 인력, 장비, 절차 및 정보에 적정의 품질경영 노력을 적용하는 일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적용은 기획, 작업, 검토 및 의사결정 단계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달려 있다. 한 가지 측면에만 모든 노력이 적용되고, 모든 다른 측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개념을 더 설명한다.

6.4 증거기반 의사결정과정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결정 및 토지해제 프로세스는 이용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증거의 품질, 분량 및 세부사항은 결정의 품질 및 신뢰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폭발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국, 에이전시, 단체 및 개인들이 알아야 할 정보출처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1) 작업반경 안의 오염된 폭발물의 종류, 그 사용에 따른 전술 및 폭발물의 상태, 분포 및 발견 가능성에 관한 시간의 영향과 관련된 증거
- 2) 데스크 조사를 비롯한 비기술조사 중에 수집된 증거
- 3) 현장 및 타 지역에서 조사 및 제거작업 중에 발견된 것과 관련된 증거
- 4) 여러 정보출처의 신뢰성과 관련된 증거
- 5) 다른 조사에서 나온 발견들 및 권고사항과 추후 기술개입 중에 발견된 것 사이의 관계에 관한 증거
- 6) 이전에 취소, 축소 및 제거(cancel, reduce, clear)가 이루어진 토지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 관련 증거
- 7) 폭발물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세스 및 산출물의 품질경영시스템에서 나온 증거
- 8) 비기술조사를 포함하는 토지해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나온 증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든 적절한 증거의 사용은 비기술조사 및 전체적인 토지해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문서화되는 것이 좋다(should). 또한 그런 증거는 법적 책임 관련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다(should).

7. 비기술조사 방법

비기술조사는 작업반경 안의 폭발물오염의 종류, 성질, 특징에 관한 최신정보에 따른 이해를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폭발물오염 정보 및 그 대응책들의 효과 및 효율성 분석은 지속적인 프로세스인 것이 좋으며(should), 가능한 한 언제나 최신정보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런 최신정보는 분석 프로세스에

반영되고, 좋은 정보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좋다(should). 데이터 분석을 책임지는 당국, 에이전시, 단체는 비기술조사를 담당하는 단체가 최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다(should). 해당 당국, 에이전시, 단체는 특히 최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지역에서 수행되는 지뢰행동 활동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동의를 확인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것은 중립위반의 가능성을 완화시키고, 지뢰행동 요원이 후에 표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완화시킬 것이다.

데스크 조사는 모든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should), 여기에는 역사기록, 경찰, 군대, 병원, 지방정부, 토지소유자, 위성사진 및 위성정보시스템 그리고 기타 현장 및 과제의 분석 결과를 포함한다. 해당 정보는 적절한 때에 평가 및 기록되어 지역 및 현장관련 분석의 기반으로 이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해당정보의 파악, 접근 및 사용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다. 데스크 조사는 해당 지역 또는 현장에 따른 상황에 한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의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

- 1)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승인한 비기술조사의 개념, 기준, 정책 및 절차의 검토
- 2) 데스크 사정(査定)의 결과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의 검토
- 3) 국가지뢰행동표준(NMAS)에서 정의한 정보수집 요구사항 및 현장 또는 상황에 맞는 추가 요구사항 확인
- 4) 여성, 여자어린이, 남자어린이, 남성 등 모든 관련 정보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조사 요구사항, 특정 자원,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고려
- 5)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조사의 측면 식별
- 6) 조사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 개발

조사절차는 조사원에 의한 주관적인 발언이 첨가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것이 좋으며(should), 증거의 객관적 수집을 권장하고, 안전, 정보 및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개선되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 중에 발견된 내용 및 다른 정보원에게서 중요한 추가 정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특히 어떤 새로운 정보가 비기술조사 계획의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사정(査定) 및 상정된 전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should). 그런 재검토로 인해 비기술조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기록되는 것이 좋다(should).

정보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수집되어야 하고, 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참조되고 분류되는 것이 좋다(should). 위험지역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추가적인 비기술 또는 기술조사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정보수집이 가능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should).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은 정보가 부족한 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간접적 또는 직접적 증거를 기반으로 규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새로운 정보의 수집 종료나 현 지역의 취소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폭발물 존재의 의심을 식별, 정의 및 제거하는 데 적용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데이터 및 정보는 국가지뢰행동표준에 명시된 보고형식을 사용하고 현장 및 지역에 특정한 추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수집 및 기록되는 것이 좋다(should). 조사단체들은 비기술조사 및 정보의 수집, 기록, 보고에 관하여 적절한 품질경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보고내용은 조사 완료 이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기 위해 지정된 당국 또는 에이전시에 전달되는 것이 좋다(should).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 입력 이전에 조사단 지도부 및 운영자에게 지도 등의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사본을 전달하여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보고내용이 배포되기 전에 상이점, 오류 혹은 불일치 사항들이 파악될 경우 수정하는 것이 좋다(should). 관련 수정 및 예방 활동은 정식으로 기록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와 관련된 표지판이나 울타리는 국제지뢰행동표준 08.4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 이후에 지역에서 수행된 제거와 같은 기술개입의 결과는 비기술조사의 품질 분석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취소, 축소 및 제거(cancel, reduce, clear) 후에 이어지는 토지의 모니터링 결과는 비기술조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또한 토지해제 프로세스의 비기술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8. 정보원

8.1 일반사항

조사단체는 모든 관련 정보원(情報源)이 파악되고 해당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수집되고 기록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좋다(should).

조사는 잠재적 폭발물 오염지역에 대해 특정 지식을 갖고 있는 남성 및 여성 증언자들을 조사 과정 중 일부로서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조직되는 것이 좋다(should). 한 가정, 가족공동체, 여성 증언자 및 어린이 증언자들과의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배정되는 것이 좋은데(should), 이는 여성 및 어린이는 가족 전체의 혼합모임에 참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매번 같은 증언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방문은 조사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얻는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수집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8.2 정보원의 사정(査定)과 분류

증거기반 정보원의 사정은 다음의 사항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 1) 타 국가 및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수행한 비기술조사를 통해 획득한 관련 경험
- 2) 다른 정보원의 정보 유지 및 보고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
- 3) 다른 정보원들과의 비교
- 4) 차후 기술조사를 통해 (그러한 개입의 경우) 발견된 증거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정보의 비교
- 5) 취소, 축소 및 제거(cancel, reduce, clear) 후에 이어지는 토지 모니터링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보원의 검토
- 6) 현지상황 및 조건에 따른 기타 특별한 관련 정보

당국, 에이전시 및 단체들이 다른 정보원에 대한 분류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주관적 고려사항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좋다(should).

분류시스템은 모든 관련 정보원에서 나온 정보의 분석내용이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기간을 두고 사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분류시스템이 수립된 경우, 다음과 같이 폭넓은 분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 7) 조사팀원들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된 폭발물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증거
- 8) 조사팀원들에 의해 관찰되고 기록된 폭발물에 대한 간접적 물리적 증거
- 9) 다른 현장 및 지역에서 수집한 직접증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신뢰성 있고 정확하다고 입증된 역사자료에서 나온 정보
- 10) 개인 및 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차자료. 해당 정보원에는 피해를 받은 공동체의 여성, 여자어린이, 남자어린이 및 남성, 군대, 경찰, 폭발물 피해자 및 모든 폭발물 설치피해자 또는 사고피해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11) 개인 및 기관이 제공하는 이차정보자료. 해당 정보출처는 폭발물의 배치 및 사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일차정보자료의 제공자들을 통해 위험 사실을 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12) 신뢰성 및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사정(査定)을 통해 신뢰성 및 정확성의 결핍이 확인된 사료(史料) 및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정보

13) 폭발물 설치, 배치 및 사용을 직접 관찰하거나 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개인 및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로서 일차정보원으로부터 위험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

직접적 증거는 간접적 증거보다 더 높은 신빙성을 갖는 증거로 일반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차정보는 이차정보 또는 비공식 정보보다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당국, 에이전시 및 단체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경우에 다른 분류시스템을 사용하여 현지상황 및 조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should).

당국, 에이전시 및 단체들은 모든 기술개입 조사 및 토지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직접 증거를 파악하고 사용하고 비교대조를 통해 정보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should). 그런 확인 작업의 결과는 분류시스템을 재검토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다(should).

8.3 토지 및 도로 이용

토지 및 도로가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정보를 사정(査定)할 때 또는 현존 위험지역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취소를 고려할 때 활용될 수 있는(may) 요소이다.

해당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체계적인 접근법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해당 지역 내부 및 지역 바로 근처의 폭발물 오염의 종류, 성질 및 분포 이해
- 2) 사정(査定)에 들어 있는 토지와 도로의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
- 3) 토지 및 도로가 얼마 동안 사용되었으며, 진입활동의 깊이 및 인간 및 차량 교통량의 밀도와 강도
- 4) 토지 및 도로가 얼마 동안 사용되었으며, 다른 시점에서 여러 밀도와 강도의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5) 비슷한 방법으로 사정된 기타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고 효과적인 경우, 보조 구역 또는 구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다른 사용기록이 있는 다른 지역들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8.4 위험지역의 세분화

필요할 경우, 위험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은 다음의 사항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하고 설명하기 위해 세분화되는 것이 좋다(should)

- 1) 상이한 오염의 종류 또는 혼합된 오염 종류의 존재
- 2) 증거의 출처 및 그 증거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상이한 신뢰의 수준
- 3) 상이한 기술자산의 종류 및 방법이 적합한 지역들

위험지역은 생산적인 사용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한 토지의 취소, 축소 및 제거(cancel, reduce, clear)로 이어지는, 차후 실시될 기술조사 및 비기술조사에 필요한 자원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게 세부구역으로 자세하게 규정되고 기술되는 것이 좋다(should).

세부구역은 표적 기술조사의 계획을 안내하고 돕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좋다(should).

세부구역은 기술적 개입을 실시하는 중에 발견하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구역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should).

9. 조사팀 요구사항

비기술조사는 안전 및 작업표준에 부합하고 국가지도행동기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검증된 방법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요원에 의하여 적정한(타당한 기관에서 인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shall).

비기술조사팀은 비기술조사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특별히 여성, 여자어린이, 남자어린이 및 남성을 포함하여 지방정부, 기타 이해관계 분야 및 모든 정보원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shall).

비기술조사 작업은 내부 및 외부 품질경영을 받는 것이 좋다(shall). 이에 대하여 국제지도행동표준 07.40은 더 많은 안내를 제공한다.

10. 문서

비기술조사팀에 의하여 수집, 기록 및 보고된 문서는 토지해제 프로세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만일 비기술조사에서 얻은 데이터 및 정보의 품질이 부실하거나 또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가 부실하게 기록되고 보고된다면, 토지해제 프로세스는 능률적이지 못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may).

당국, 단체 및 에이전시는 비기술조사 문서가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모든 정보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좋다(shall). (정보측면의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이 비기술조사에서 얻은 정보의 수집, 기록, 보고 및 분석을 위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다(shall). 비기술조사 데이터, 정보 및 문서 품질의 결점은 찾아내어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hall).

비기술조사 중에 사용되는 보고양식은 국가지뢰행동표준(NMAS)에 규정되는 것이 좋다(should). 보고서는 조사 중에 행한 결정과 더불어 그 결정의 기반이 된 증거를 확인하고 기술하는 것이 좋다(should). 기술조사로부터 얻은 증거는 하나의 조사보고서로 정리될 수 있지만(may) 모든 일차데이터 및 증거는 적정 기관에서 보관하고 보호해야 한다.

정보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고 기록되는 것이 좋다(should).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용을 위한 표준적이고 검증된 정보관리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should). 정보관리에 관한 지침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5.10에서 찾을 수 있다.

위치지도는 주어진 위협의심지역 및 위험확인지역의 경계 범위를 찾고, 조사표지와 위험표지 시스템의 위치를 찾고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기획자, 분석자 및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타 관련 정보들도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정보는 전자기록으로 만들어지거나 지형지도, 위성영상 및 추적도로 표시되는 것이 좋다(should). 만일 지형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정보는 지역적으로 만든 지도에 기록되는 것이 좋다(shall). 상세지도는 폭발물오염의 직접적 증거의 위치 및 기타 특징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 중에 기록된 정보는 다음의 기술조사나 지뢰제거를 수행할 단체에게 전달하고 중국의 토지해제를 위하여 문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should). 핵심정보원의 이름, 나이, 성별, 직명 및 사인이 기록되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팀원에게는 자신의 조사 결과를 지뢰제거 또는 기타 기술적 개입에서 비롯되는 후속 정보와 비교하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should).

11.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참여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토지가 해제된 후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기술조사를 비롯한 토지해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지역사회 참여는 의심지역 안에 혹은 가까이 살거나 일하는 남성, 여성 및 어린이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토지의 취소, 축소 또는 제거 (cancel, reduce, clear)후에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가 구성되는 것이 좋다. 모니터링은 잘 계획되고, 취소된 토지가 지역 생활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고, 혹시 모를 폭발물 사고에 책임 및 토지문제에 관련된 사안의 확실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여러 다른 사람들 사이에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should).

12. 책임 사안

토지해제에 따른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준비 및 비기술조사를 통한 토지 취소에 관여하는 일은 책임 사안에 대한 인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모든 합리적인 노력의 적용을 통하여 폭발물의 모든 존재와 의심을 확인하고, 특정하고, 제거하는 일에 대한 문서화, 투명화, 증거기반의 접근법은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장려하는 데 주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책임문제는 토지 해제의 다른 측면만 아니라 비기술조사를 통한 토지 취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지뢰행동기구는 그것이 규범, 정책, 표준 및 다른 적절한 문서들을 통하여 반드시 다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shall).

본 표준은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 책임원칙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7.11에 요약되어 있다.

13. 책임과 의무

13.1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의 사항을 행해야 한다(shall).

- 1) 토지해제 정책과 일치하는 비기술조사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
- 2) 비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단체를 인정
- 3)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비기술조사를 위한 표준과 지침을 준비하고 출판하는 일
 - 비기술조사 계약 및 합의서에 적용되는 품질경영
 - 비기술조사에 대한 문서화
 - 위치데이터에 대한 정밀 요구사항
- 4) 오염의 성격, 규모 및 분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업무지시서와 연간업무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비기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 5) 국가규정에 따라, 조사 및 제거 작업자들, 비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개인들 및 지역 커뮤니티에 관련된 책임 문제를 확인
- 6) 비기술조사를 통해 토지해제 산출물의 품질을 모니터링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비기술조사에 의하여 이전에 기록된 의심토지의 취소 또는 새로운 정보의 배제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should). 적용 기준은 핵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되는 것이 좋으는데(should), 이는 개인, 비기술조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체, 지뢰행동센터, 국가지뢰행동기구 그리고 토지(한 개인 또는 지방정부의 대표일 수 있는)를 받을 책

임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포함할 것이다.

13.2 조사단체

비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행해야 한다(shall).

- 1) 비기술조사 수행에 필요한 인정(국가지리행동기구, 지리행동센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으로부터)을 받는 일
- 2) 비기술조사를 위한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일. 조사단체는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에 국제지리행동표준, 또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규정된 것과 같은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shall).
- 3) 비기술조사의 실행을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개발하는 일
- 4) 비기술조사 문서화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
- 5) 해당되는 경우,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에게 사정이 끝난 현장을 공식 이양하는 일
- 6) 국가지리행동기구 또는 지리행동센터 같은 곳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이용 가능한 문서를 유지하거나 작성하는 일
- 7) 비기술조사 중에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해,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의 남성과 여성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일
- 8) 보고서의 품질, 타임라인 및 내용의 관점에서 보고서 수령자로부터 온 피드백을 살펴보는 일

조사단체는 국가지리행동기구 또는 동등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인 책임을 맡는 것이 좋다 (should). 이것은 국가지리행동기구와 지리행동센터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을 설립하는 중에 있는 주최국이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를 포함하는 비기술조사를 위한 표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부속서 A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 1)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 2) 국제지뢰행동표준 07.30 지뢰행동단체 인정
- 3)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 지뢰행동단체 모니터링
- 4) 국제지뢰행동표준 08.10 비기술조사
- 5)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 기술조사
- 6) 국제지뢰행동표준 09.10 제거작업 요구사항
- 7) 국제지뢰행동표준 09.11 전투지역제거
- 8) 국제지뢰행동표준 05.10 지뢰행동 정보관리
- 9) 국제지뢰행동표준 08.30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
- 10) 국제지뢰행동표준 08.40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표지
- 11) 국제지뢰행동표준 09.50 기계지뢰제거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 번역 및 판본의 등록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
1	2010.3.1	1. 유엔지뢰행동조직 주소 업데이트 2. 국가지뢰행동기구 정의 업데이트 3. 제3항 전쟁잔류폭발물이 확산탄을 포함하고 있다는 참고 포함 4. 성 이슈를 보장하기 위한 작은 변경 5.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에서 부속서 B 제거. 부속서 C를 B로, 부속서 D를 C로 제목 변경
2	2013.3.1	1.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개발 영향 재검토(2012.8) 2. 해설 업데이트 3.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취소토지, 축소토지, 제거토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 포함 4. 문서 전체에 ‘축소’ 용어 통합 5. 전반적인 글자 수정 6. 국제지뢰행동표준 08.10 재명명 7. 부속서 A 인용표준 업데이트 8. 부속서 B, C, D 제거
3	2018.7.26	1.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을 ‘폭발물’ 로 변경 2. 5쪽, 급조폭발물의 직접 증거 사례 포함 3. 7쪽, 커뮤니티 동의 참고 4. 9쪽과 12쪽, 부차적인 단어 조정 5. 부속서 A 인용표준 업데이트